

#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군민 의식, 손님맞이,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문화군민운동의 정의(안 제2조)

- “문화군민운동”이란 군민의식 함양, 손님맞이, 군민통합을 위한 강원도 문화도민운동 분야별 우리군 민간자율참여 운동을 말한다.
- “문화군민운동협의회”란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 지원 및 문화군민운동 실천을 위해 설립된 민간추진 협의회를 말한다.

### 나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- 주민 참여 및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 하여야 한다.
- 문화군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·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

다. 협의회 사업(안 제4조)

- 문화군민운동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·추진
- 군민의식 함양, 손님맞이 등 군민역량 결집을 위한 범 군민운동 전개
- 강원도, 유관기관·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범 조성 추진
- 그 밖에 문화군민 캠페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

라. 행정지원 등(안 제5조)

-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군수는 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(1) 입법예고('13. 12. 19. ~ '14. 1. 8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'13. 12. 30 심사결과 원안동의
- (3)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: '14.1.28 심사결과 원안동의

##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군민의식, 손님맞이,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군민운동"이란 군민의식 함양, 손님맞이, 군민통합을 위한 강원도문화도민운동 분야별 우리군 민간자율참여 운동을 말한다.
2. "문화군민운동협의회"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 지원 및 문화군민운동 실천을 위해 설립된 민간추진 협의회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주민참여 및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문화군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·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협의회의 사업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문화군민운동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·추진
2. 군민의식 함양, 손님맞이 등 군민역량 결집을 위한 범 군민운동 전개
3. 강원도, 유관 기관·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범 조성 추진
4. 그 밖에 문화군민 캠페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

제5조(행정지원 등) 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「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협의회가 문화군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결산보고 등)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조례안 제5조에 의거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 가능함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제 제5항 중 제1호 및 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개최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조례가 운영되며, 강원도문화도민운동과 연계사업, 군민의식, 손님맞이 캠페인 등 정확한 비용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.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
연락처	(033) 330 - 2210

# 관 계 법 령

## 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법인·단체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생략

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